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1-15관련

발의년월일 : 2021. 1. .
발 의 자 : 이필례 외 1명

1. 수정이유

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5항 중 “수당의 1/2 삭감”을 삭제함.

나. 제18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실비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”를 “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수당의 1/2 삭감”을 삭제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실비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”를 “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의원 임기·사퇴·징계) ① ~ ④ (생 략) ⑤ 의원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, 어린이·청소년 의장단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원에게 경고, 사과요구, 수당의 1/2 삭감,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6조(의원 임기·사퇴·징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.-------사과요구, 해임 ----------.
제18조(수당) 구청장은 본회의·상임위·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.	제18조(실비 등 지원) ---------- ----- 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